

경로장애인과

□ 신규시책

1.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39
2.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관 확충 40
3.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추가 지원 41

□ 계속·연례반복 사업

4. 기초연금 지급 사업 42
5. 노인일자리 사업 43
6. 노인돌봄사업 44
7. 노인복지시설 지원 45
8.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46
9.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47
10.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가산급여 추가 48
11. 장애인 직업교육 확대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49

1.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원주시만의 정책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원주시 고령친화도 진단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의 평가 등

□ 추진 계획

- 2023. 2.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 2023. 7.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 10.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3. 10.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소요 예산

- 46백만 원(시비)

□ 기대 효과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관련정책 및 시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관 확충

- 원주시 전역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사업 개요

[노인문화센터 설치]

- 위치: 중앙동 자유시장, 중앙시장 인근
- 방법: 시유재산 건물 미확보로 개인소유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후 민간위탁 운영

[노인복지관 건립]

- 위치: 무실동 일원
- 방법: 무실동 일원 시유지 확보 및 건립 후 민간위탁 운영

□ 추진 계획

- 2022.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2023. 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회)
- 2024. 3. 노인문화센터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2024. 3.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확보 및 착공

□ 소요 예산

- 노인문화센터 설치: 5,000백만 원(시비)
- 노인복지관 건립: 8,500백만 원(시비)

□ 기대 효과

-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관 설치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3.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추가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품목: 7개 품목 구입비 및 수리비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기준: 보장구 구입 및 수리 시 의료급여 지원액 및 추가 급여액 외 최대 100천 원 추가 지원
- 사업인원: 100명
- 사업비: 10백만 원(100명 × 100,000원)

□ 추진 계획

- 2023. 3. 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요청
- 2023. 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
- 2023. 1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결정
- 2024. 1. 사업추진

□ 소요 예산

- 10백만 원(시비)

□ 기대 효과

-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추가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4. 기초연금 지급 사업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기초연금법」제14조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지급액: 1인당 최소 30,750원~최대 307,500원
- 사업비: 129,980백만 원(국 103,984, 도 5,199, 시 20,797)

□ 추진 상황

- 기초연금 지원
 - 월평균 38,500명 지급 / 월평균 수급률: 66.0% (2022. 7. 기준)
 - 월 지급액: 107억 원

□ 추진 계획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사후관리

5.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 사업대상: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지원센터
- 지급액: 월 27만 원(공익형 기준: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소요예산: 21,528백만 원(국 10,511, 도 1,997, 시 8,767, 기 25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1,022백만 원
 -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복권기금)사업 506백만 원
- 수행기관: 원주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 추진 상황

- 사업량: 5,728명
- 사업내용: 40개 사업단
 - 원주시니어클럽: 공익형 11개, 사회서비스형 6개, 시장형 13개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공익형 8개, 취업알선형 1개
 -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공익형 1개
- 복지부 평가 결과
 - 원주시니어클럽: 전국 우수기관 A등급 선정(인센티브 25백만 원)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공익형 전국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5백만 원)
- 노인일자리 사업 원주시 우수 지자체 선정(2022. 9. 14.)

□ 추진 계획

- 노인일자리 도내 최고 수준 달성을 위한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 시장형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제고를 통한 전국 평가 우수기관 달성

6. 노인돌봄사업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소요예산: 3,872백만 원(국 2,711, 도 230, 시 931)
- 수행기관: 원주가톨릭노인복지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14명, 생활지원사 182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 사업대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요예산: 478백만 원(기 239, 도 47, 시 192)
- 수행기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정배)
- 수행인력: 응급요원 9명

□ 추진 상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대상: 2,987명(100% 달성)
- 사업내용: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 사업대상: 1,802세대(100% 달성)
 - 노인세대 1,691세대, 장애인 세대 111세대

□ 추진 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질적 제고
- 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속적인 확대 추진

7. 노인복지시설 지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및 이용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시설 활성화 유도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 지원대상

(단위: 개소)

| 합계 | 양로시설 | 재가시설 | 요양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
| 539 | 1 | 5 | 63 | 2 | 459 | 9 |

- 사업비: 11,211백만 원(국 2,785, 도 2,197, 시 6,229)
 - 양로시설 운영비: 914백만 원(도 695, 시 219)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0백만 원(시비)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3백만 원(도 67, 시 66)
 - 보장시설 생계급여: 2,482백만 원(국 2,234, 도 174, 시 74)
 - 노인복지관 운영비: 2,100백만 원(시비)
 - 경로당 운영비: 5,015백만 원(국 551, 도 1,254, 시 3,210)
 - 노인교실 운영비: 67백만 원(도 7, 시 60)

□ 추진 상황 및 계획

- 양로시설 운영비: 종사자(15명) 인건비 및 운영비(입소자 43명), 프로그램 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5개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기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외자(3명) 지원
- 노인복지관 운영비(2개소): 종사자(29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2,131백만 원 / 459개소
-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 94백만 원 / 40개소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225백만 원
- 경로당 노인건강 및 순회 프로그램(252백만 원) 및 정부양곡 구입비(218백만 원)
- 경로당 사업비(경로당 안전점검 외 4): 95백만 원
- 노인교실 운영비 및 프로그램(강사비): 67백만 원

8.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 장애인 소득증대를 통한 자활·자립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고용 창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7.~2023. 9.
- 위 치: 원주시 무실동 708-11
- 사업규모: 부지면적 396㎡ / 연면적 1,311.13㎡(지상 4층)
- 생산업종: IT사업, 영상사업, 메타버스사업, 베이커리카페
- 사 업 비: 30억 원
 - 자본금: 10억 원(원주시 출자 3억, 민간사업자 7억)
 - 신축비: 20억 원(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66명

□ 추진 상황

- 2020. 7.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계획 수립
- 2021. 3. 사업자 선정
- 2021. 12. 법인설립[(주)대한복지진흥원]
- 2022. 4. 실시설계 용역
- 2022. 6. 건축 인·허가 진행 및 중증장애인 13명 고용 완료

□ 추진 계획

- 2022. 12. 표준사업장 착공
- 2023. 9. 표준사업장 준공

9.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사업비: 2,312백만 원(국 1,261, 도 210, 시 841)
- 주요직무: 일자리 사업별 행정보조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추진 상황

- 사업량: 144명(전일제 42명, 시간제 12명, 복지일자리 65명, 안마사 파견 15명, 요양보호사 보조 10명)
- 사업내용: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수행기관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직접 운영)
 - 복지일자리, 요양보호사보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 위탁운영

□ 추진 계획

- 참여자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재원 계획(일반국비사업, 보건복지부)

(단위: 백만 원)

| 구분 | 총사업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이후 |
|---------|-------|-------|-------|----------|
| 계 | 7,652 | 2,312 | 2,543 | 2,797 |
| 국비(50%) | 4,174 | 1,261 | 1,387 | 1,526 |
| 도비(10%) | 695 | 210 | 231 | 254 |
| 시비(40%) | 2,783 | 841 | 925 | 1,017 |

10.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가산급여 추가

-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활동지원사 임금 현실화로 중증장애인에 원활한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 사업 개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장애인연금법」 제3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사업비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10,851백만 원(국 7,595, 도 977, 시 2,279)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0,435백만 원(국 13,216, 도 1,394, 시 5,825)
 -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30백만 원(시비)

[활동지원 가산급여 추가]

- 지원대상: 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400점 이상~445점 이하 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 사업비: 90백만 원(시비)
- 지원내용: 시간당 1,000원의 원주시 자체 가산수당 지원
 - ※ 복지부 가산수당 대상: 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이상인 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 추진 상황

-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 2,611명(최소 20,000원~최대 387,500원)
- 장애수당 수급 대상: 3,037명(최소 20,000원~최대 40,00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인원: 725명(만 6세~만 65세 등록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 33명(월 5만 원 한도)

□ 추진 계획

-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사후관리
- 2023. 3. 활동지원 가산급여 추가지원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요청

11. 장애인 직업교육 확대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역량강화
-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

□ 사업 개요

[장애인 직업교육 확대]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중 직업교육 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장애인 직업교육 분야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참여자 역량과 욕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지원대상: 29개소

| 구 분 (단위: 개소) | 생활시설 | | | 이용시설 | | | | |
|-----------------|--------|----------|---------|------|---------|---------|-----------|---------|
| | 생 활 시설 | 단 기 거주시설 | 공동생활 가정 | 복지관 | 주 간 보호소 | 직업재활 시설 | 생활이동 지원센터 | 수어통역 센터 |
| 29 | 6 | 2 | 6 | 2 | 4 | 7 | 1 | 1 |

- 지원내용: 29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사 업 비: 17,938백만 원(국 6,592, 도 596, 시 10,750)

□ 추진 상황

- 장애인복지시설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종합복지관(2개소 / 57명)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7개소 / 209명)
-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분기별 운영비 지원

□ 추진 계획

- 장애인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체계 확립